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328821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 판 경 과

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32882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3666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김재권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권민경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4.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3666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천시 G 대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2㎡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17, 18, 9, 19, 20, 21, 22, 8, 9, 10, 11, 12, 13, 14, 15, 16, 7,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1㎡ 지상 시멘트 블록조 담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조 바닥을 각 철거하고,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8㎡를 인도하고,

다. 17,007,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2. 9. 2.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1,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치고, 제6쪽 제16행의 “포함되지 않았으므로”를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므로”로 고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의 “보아야 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가 점유하는 위 (가) 부분과 이 사건 인접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보다 지대가 높아 그 사이에 단차가 존재하고 이 사건 인접 창고의 일부 벽면과 그에 연결된 담장이 이 사건 토지와의 현실의 경계를 이루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현실 경계 및 형상이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지적공부상 경계 및 형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인접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있는 김천시 H 토지와는 별지1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접한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그 지상 건물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 사건 인접 창고의 상당 부분이 위 H 토지 지상 건물과 접하고 있는 점』

나.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은 추가하고, 제6쪽 제2행의 “라. 소결론”을 “바. 소결론”으로 고친다.

『라. 피고의 과실수취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인접 주택, 이 사건 인접 창고, 이 사건 담장 및 바닥 중 각 침범 부분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이 오신한 데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등 참고). 그런데 위 제2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침범 부분의 면적, 담장 등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침범 부분에 대한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측이 약 28년간 피고의 경계 침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원고 소유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통해 이 사건 침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 판사 김준철, 판사 김승섭

별지